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58
----------	-------

발의연월일 : 2021. 8. 9.

발 의 자 : 서영교 · 김민철 · 민형배
서삼석 · 오영환 · 이병훈
이해식 · 임오경 · 정정순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로 대표되는 감염병 증가,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그간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접해온 시민사회의 역할과 경험을 존중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

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시민사회위원회 및 시·도 시민사회위원회(안 제8조 및 제9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두며, 각 시·도는 시·도 시민사회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시민사회재단의 설립(안 제10조)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마.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안 제11조)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는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을 위하여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의 목적이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있어 시민사회와 협의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

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을 보장할 것
2.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를 존중할 것
3. 공익활동을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4.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

제5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공익활동과 시민사회 제반 분야에 대한 현황, 정책 및 제도 여건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점 과제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 및 조달 방안
5.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
6.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8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사회위원회) 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6.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위원: 시민사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및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관계부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시민사회 활

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한국시민사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및 시·군·구 시민사회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 사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사업
4.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
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사업

6. 시민사회단체 관련 현황 및 통계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는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군·구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 및 시·군·구 시민사회지원센터(이하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시민사회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